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48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 박덕흠 · 김예지 · 김선교

이종배 • 고동진 • 서천호

강승규 · 김정재 · 엄태영

김기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 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는 다른 스포츠 분야와 달리 선수층이 매우 어리고 선수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 하게 되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의 '스포츠 선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 추진' 규정처럼 이스포츠에서도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선수들이 은

퇴 후 사회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1조의2(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수		
	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 지원 시		
	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